

국내 타 대학 등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

제 정 2004. 3.
 개 정 2007. 3.
 개 정 2010. 6.
 개 정 2015. 10.
 개 정 2019. 11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학칙 제39조 등에 의거 국내 타 대학을 비롯한 학점인정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학점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와 타 대학 간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교류 및 수학하는 학생 및 본 대학교에서 정한 학점인정기관에서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된다.

제3조 (책임과 권한) ①국내 타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교류 및 이수학점의 인정업무의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타 대학 수학승인 및 학점인정
2. 타 대학 학생의 수학 허가 및 취소

②국내 타 대학 간에 학생교류 및 이수학점의 인정업무의 관련부서는 전공학부(과)로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타 대학 수학 추천
2. 타 대학 학점인정 추천

제2장 본 대학교 학생의 타 대학 등 수학

제4조 (지원자격) ①타 대학 등과의 학점교류 지원 자격은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한다.(개정 2019.6.14)

1. (삭제 2019.6.14)
2. (삭제 2019.6.14)

② (삭제 2019.6.14)

제5조 (지원절차 및 서류) 지원자는 타 대학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타 대학 수학지원서 1부.
2. 성적증명서 1부.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되어지는 서류.

제6조 (추천 및 수학승인)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학점교류를 지원한 경우 학부(과)장의 추천을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명단을 해당 대학에 송부한다.

제7조 (수학기간) 타 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대학 간 협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.

제8조 (등록 및 수강신청) ①타 대학 수학을 승인받은 학생은 본 대학에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해야 한다. 다만, 학점취득에 필요한 시험·실습 등에 따르는 비용은 대학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의 수강료 수납 감면규정에서 제외된 수강료의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금액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수강신청은 타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
제9조 (교과목이수) 타 대학에서의 수강가능 학점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한 학기별 수강가능 학점 범위 내로 한다.

제10조 (학점인정) ①학점인정의 범위는 재학 중 36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. 다만,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36학점을 초과하여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9.11.05.)

②타 대학에서 수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수학한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소속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소속 학부(과)장은 제출된 성적을 학과(전공)단위평가위원회에서 사정한 후 타 대학이수학점 인정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.

④타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및 성적은 본 대학 성적표에 교류로 인한 이수과목임을 표시하고 그 과목명 및 성적을 기재할 수 있다.

⑤타 대학 이수교과목 및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⑥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과의 확인을 거쳐 이수당해 학년-학기에 적용받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이수구분별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3장 타 대학 학생의 본 대학교 수학

제11조 (지원자격)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타 대학 학생은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.

제12조 (지원신청 및 수학허가) ①타 대학의 장은 지원자 명단을 본 대학교 수강신청 개시일 1주전까지 본 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본 대학교에서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 후 해당 대학에 통보한다.

제13조 (등록 및 수강신청) ①제11조에 의거 타 대학 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본 대학교 수학기간 중 등록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본 대학교에 수학이 허가된 학생의 수강신청 시기 및 방법은 본 대학교의 절차에 따른다.

제14조 (수학허가의 취소)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 대학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5조 (취득학점) ①타 대학 학생이 본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·2학기 각(여름 및 겨울학기포함) 18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
②타 대학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교무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해당대학으로 그 결과를 통보한다.

제16조 (시설물 이용) 본 대학교에 수학이 허용된 학생에게는 본 대학교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4장 기타 학점인정기관에서의 수학

제17조 (기타 학점인정기관 이수범위) ①기타 학점인정기관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학점인정기관, 본 대학교 및 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 교육기관, 기타 총장이 인정한 교육이수기관을 말한다.

②본 대학교에서 별도로 인정한 학점인정기관에서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으로 한다.

③1·2학기 각(여름 및 겨울학기 포함) 6학점 이내로 졸업 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하며, 인정과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
제18조 (등록 및 위탁교육비) ①기타 학점인정기관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점당 등록금에 준하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기타 학점인정기관의 위탁교육비는 본 대학교와의 별도의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.

③별도 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금의 1/4 범위 내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장 부 칙

제19조 (준용규정)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교무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(2004.3.1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3.1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6.1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10.5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의 특례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9.6.14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의 특례) 제10조1항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 이수자부터 적용한다.